

의안번호	2209957
의 퇴 인	임미애의원
회 답 일	2025.6.5.
추계번호	25D2938

2025년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
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구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억 5,000만원(연평균 2억 5,0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(안 제5조)	250	250	250	250	250	1,250	250

주: 1.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(안 제5조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 보상위원회)	국가가 초대형산불 판정 및 피해자 보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	의무규정
		위원회는 초대형산불 판정에 관한 사항,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1조 제2항 (보상금의 지급) 등	국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을 신청한 자에게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0조 (생계지원금 등)	국가는 피해자에게 생계지원금, 주거지원금,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22조(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특례)	국가 등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아래의 지원을 할 수 있음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. 주거용 건축물(초대형산불 발생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복구비 지원 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. 자금의 융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및 시설복구비 등의 지원 7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8. 생산·영업시설 및 장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·장비의 복구를 위한 지원 9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10.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과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11. 임시주거시설 지원 12.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13. 산불로 인해 주거기능을 상실한 건물의 철거비 지원 14. 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,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용 지원 15. 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16. 심리상담 등의 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·치료 17.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18. 그 밖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,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)	○	-
2	안 제11조 제2항 (보상금의 지급) 등	X	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, 평균 보상금, 지급 신청률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20조 (생계지원금 등)	X	생계지원금, 주거지원금,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있어 중복 지원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4	안 제22조 (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특례)	X	사망자 등에 대한 구호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, 그 밖에 지원까지 18가지 지원 항목별 대상자 수, 평균 지원 비용, 중복지원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전문위원회 구성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
- 제정안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상시 근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사사례인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추계

-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 수, 참석수당,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
 - 제정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, 본 추계에서는 50%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전문위원회의 경우, 초대형 산불 판정과 보상금 관련으로 2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0명의 위원을 위촉하되 50%는 민간위원이고 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사사례인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면, 회의 참석수당(안전검토 포함) 4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억 5,000만원으로 추정
 -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: 1억 5,400만원 = 8명×40만원×월 4회×12개월
 -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: 9,600만원 = 5명×40만원×월 4회×12개월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구성	154	154	154	154	154	770
전문위원회 구성	96	96	96	96	96	480
합계	250	250	250	250	250	1,2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,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